

창원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6488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64884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0가단666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

담당변호사 박희준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도움

담당변호사 이수경

2. 창원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

변론종결 2022. 7. 14.

판결선고 2022. 8. 25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0가단666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84. 2. 14. 접수 제4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창원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. 3. 31. 접수 제23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. 3. 4. 접수 제14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“1999. 3. 4.”을 “1999. 3. 31.”로 고친다.
-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“경료하였으므로”를 “경료하였거나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사용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깨어지므로”로 고친다.
-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“가.”를 삭제한다.
-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“이유없다.” 다음에 “다음으로 원고는, 망인은 장남인 G를 신뢰하지

못해 차남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한 점,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
창원시 C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모친 및 형제들과 나누어 가진 점 등을 들어 피고 B 명의로
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사용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
살피건대,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맡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
같은바, 망인의 등기권리증 교부 행위를 단순한 재산의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
없는 점, 피고 B로서는 가족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원시 C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모친 및
형제들과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점,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
부동산을 원고를 위한 상속재산으로 따로 남겨 놓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
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
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
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우영, 판사 진민희, 판사 하상제

별지